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99

제출년월일 : 2011. // .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부터 제16조, 안 제23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3).
- 나. 안산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재활용신고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만료 후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계약제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5항).
- 바. 법령상 근거없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함 (안 제8조).
- 사. 시장에게 위조·유사 불법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아. 시장에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자.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차. 판매소로 하여금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권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카. 판매소 지정취소 대상을 위조·유사 종량제봉투 판매에서 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제재사항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2항).

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함(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64조,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4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1. 10. 11. ~ 10. 31.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kg” 을 “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을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로 한다.

제2조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량건설폐기물” 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제8호(종전 제2조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 제2조제8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산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탁” 을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소량건설폐기물용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소량건설폐기물”로 하고,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량건설폐기물 마대 :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전용

제12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제작 등)”을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를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위조·유사·중당제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규격봉투를 위탁 제작하는 경우 불법제작, 부정유출 및 재위탁 금지 등 규격봉투 위탁 제작에 따른 사고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를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격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용 포대”를 “종량제봉투(소량건설폐기물 마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함은 물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조·유사·종량제봉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공급 등)”을 “(종

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그 판매·공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은 미리 제작하여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판매방법·유통수수료·공급가격"을 "판매방법·공급가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을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격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판매자"를 "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규격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상 의무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종전 제1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각각 "종량제봉투(납부필증)"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종량제봉투(납부필증)"로, "판매하는 경우"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종량제봉투(납부필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법 제6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판매소 및 지정인"을 "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로 하고,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지정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종량제봉투(납부필증)”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안산시 시세 조례」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 중 “기타”를 “5종”으로 한다.

별표2 규격봉투판매금액 중 “규격봉투”을 “종량제봉투”로 한다.

별표3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표지판 중 “규격봉투”을 “종량제봉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청소행정과 정상래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정책계장 조차종
	담당자 성명·전화	임준홍 (행정 35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
1. “일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1. 이란
2. “재활용자원”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이란
3.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3. 이란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이란
5. “종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이란 칼로그램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신설>	7.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이란 제 7 호
8. “쓰레기 종량제”라 함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 (생략)</p> <p>②(생략)</p> <p>1.~2.(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별표 2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p>	<p>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 (생략)</p> <p>② (생략)</p> <p>1.~2.(생략)</p> <p>3. 소량 건설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p>
<p>제11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4. (생략)</p> <p>5.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포대 : 공사장 생활 폐기물 전용</p>	<p>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종량제봉투</p> <p>1.~4. (생략)</p> <p>5. 소량건설폐기물 마대 : 불에 타지 않는 5 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전용</p>
<p>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색상·용량·규격 및 재질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규격봉투를 위탁 제작하는 경우 불법제작, 부정유출 및 재위탁 금지 등 규격봉투 위탁 제작에 따른 사고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규격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④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위조·유사 종량제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p> <p>②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p> <p>③ 종량제봉투(소량건설폐기물 마대..... 종량제봉투.....).</p> <p>④ 종량제봉투</p> <p>제12조의 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p> <p>①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함은 물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위조·유사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공급 등) ① 규격봉투는 미리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문공급업자를 통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한다.</p> <p>②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미리 제작하여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법·유통수수료·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윤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공급 등)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그 판매·공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한다)은.....</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종량제봉투.....판매방법·공급가격.....</p>
<p>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p> <p>①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 규격봉투</p> <p>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p> <p>① 종량제봉투.....종량제 봉투.....판매소..... ② (생략) 종량제봉투</p> <p>③종량제봉 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상 의무 사항..... ④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1.종량제봉투(납부필증)..... 2.종량제봉투(납부필증).....</p>
<p>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① (생략)</p> <p>1. 위조 또는 유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는 경우</p> <p>2. ~ 3. (생략)</p> <p>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① (생략)</p> <p>1.종량제봉투(납부필증).....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 3. (생략)</p> <p>4.종량제봉투(납부필증).....</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법 제6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p>
<p>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판매소 및 지정인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물품 불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종량제봉투위탁하는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 ② (생략) ③ 불법으로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종량제봉투(납부필증)범위에서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체분 등에 관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별표 1]	[별표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 (제10조제2항제2호관련) (단위: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 (제10조제2항제2호관련)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1 종</th><th>2 종</th><th>3 종</th><th>4 종</th><th>기 타</th></tr> </thead> <tbody> <tr> <td>납부필증금액</td><td>13,000</td><td>11,000</td><td>8,000</td><td>5,000</td><td>2,000</td></tr> </tbody> </table>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기 타	납부필증금액	13,000	11,000	8,000	5,000	2,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1 종</th><th>2 종</th><th>3 종</th><th>4 종</th><th>5 종</th></tr> </thead> <tbody> <tr> <td>납부필증금액</td><td>13,000</td><td>11,000</td><td>8,000</td><td>5,000</td><td>2,000</td></tr> </tbody> </table>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납부필증금액	13,000	11,000	8,000	5,000	2,000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기 타																				
납부필증금액	13,000	11,000	8,000	5,000	2,000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납부필증금액	13,000	11,000	8,000	5,000	2,000																				
[별표 2] 규격봉투판매금액	[별표 2] 종량제봉투판매금액																								
[별표 3]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표지판(제14조제3항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표지판(제14조제3항관련)																								